

	장 학 규 정	규정번호	3-4-03
		제정일자	1992. 3. 1
		개정일자	2026. 3.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민대학교(이하“본 대학”이라 한다)의 장학생 선정과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의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 등은 국가기관 또는 개인 및 교외 장학단체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장학대상) 본 대학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받은 수 있는 자는 본 대학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입학성적 및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2. 본 대학의 설립이념에 적합한 실적이 있는 자
3.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
4. 교내 특정 부서에서 근로봉사 하는 자
5. 학생자치활동 및 봉사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
6. 보훈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및 그 직계 자녀
7. 본 대학의 명예와 발전에 공헌한 자
8. 본 대학 교직원 및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자녀
9.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4조(지급액 및 인원) ① 장학금의 지급 총액은 매 학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다.

② 장학금의 지급액 및 지급인원 등 세부사항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③ 장학 종류별 선발기준 및 지급내용은 본 규정에 불구하고 장학위원회에서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2장 장학위원회

제5조(장학위원회) ① 장학정책의 수립 및 장학생의 선발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9인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하며, 장학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보직자인 경우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학생 선발 및 추천에 관한 사항
3. 장학생 수의 배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장학금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학에 관한 중요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대면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3장 장학생 선발기준 및 지급내용

제8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9조(장학금의 선발기준 및 지급내용) ① 장학생 수는 학과·학년별로 재학생 수에 따라 균형이 유지되도록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과로 인한 학적변동자의 성적장학은 학적변동전의 수업료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③ 장학금의 선발기준 및 지급내용은 별표에 의한다.

제4장 장학금지급 및 관리

제10조(장학금 신청) 장학금 수혜 희망자는 장학금 신청기간(매 학기 말)중에 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수혜 신청서(소정양식)

2. 각 장학금 종류에 해당하는 증명서(다만, 보훈대상자 증명서는 1회 제출로 재학 중 유효하나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 다시 제출)

제11조(교내 장학생 추천) 장학생 추천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각 학과장은 제9조에 근거하여 장학담당 부서에서 통보받은 제출기일에 맞춰 해당 장학생을 추천하여야 한다.

2. 가정 사항을 특히 고려한다.

3. 각 학과장은 교수회의 심의와 지도교수 의견을 참작하여 장학생을 추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교외 장학생 추천) 교외 장학생의 추천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교외 장학단체 등에서 해당 장학생을 지정하여 추천을 의뢰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 없는 한 출연자 및 유치자의 조건에 따라 지급대상을 선정하여 총장 결재를 득하여 추천한다.

2. 제1호를 제외한 경우에는 해당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총장 결재를 득하여 추천한다.

제13조(장학생 교체추천) 장학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교체하고자 할 경우 해당 학과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장학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외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을 경우

2. 선발 전 휴학 및 제적되었을 경우

3. 본인이 장학금 수혜를 포기하였을 경우

4. 기타 사유로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14조(장학생 선발) 장학담당 부서에서는 해당 각 학과장으로부터 추천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증빙 서류(학업성적, 장학내용, 이중 추천여부)등을 검토한 후,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제15조(장학금 지급)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의 장학금은 등록금 고지 시 학비감면의 형태로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근로 장학생의 관리) 근로 장학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지급중지) 선정된 장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취소한다.

1. 징계처벌을 받은 자
2. 휴학 또는 제적된 자
3. 미 취득과목(F, N)이 있는 자(예외 장학 있음)
4. 기타 장학금의 지급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18조(이중 수혜 가능) 동일 수혜기간 내에 동종(유사) 장학금의 중복 지급은 금지한다.

제19조(이중 지원 금지) 모든 장학내용의 총액이 등록내용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타 장학수혜에 따라 장학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학금은 등록내용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생활비 명목의 학자금
2. 대가성 장학금(근로장학, 봉사장학, 튜터링장학, 지역사회재능장학)(개정 2025.9.1.)
3.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 지원의 성격을 지닌 경우에는 제외)
4. 기타(해외연수장학, 지정교외장학, 어학장학, 학우사랑장학 등)

제20조(장학생의 자격상실) 모든 장학명에 해당하는 장학생이라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해당하면 장학금의 수혜 자격을 상실한다.

1. 선정된 장학생이 소정의 등록 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매 학기 공고된 장학금 신청기간이외 추가로 신청할 경우
3. 선정된 장학생이 자퇴 등 학적변동에 의해 학적을 상실할 경우

제21조(지급 및 수혜 기간) ①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매 학기 중에 지급하고 수혜 기간은 한 학기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만학도장학 장학수혜는 입학학기 1회로 제한한다.(개정 2021.3.1, 2022.3.1.)
- ③ 산업체장학, 학사학위장학, 유보통합지원장학 장학수혜는 2년제 4회, 3년제 6회로 제한한다.(개정 2024.3.1., 2025.9.1., 2026.3.1.)
- ④ 특별장학(KIND21-편입) 장학수혜는 2년제 3회, 3년제 5회로 제한한다.(신설 2022.3.1.)
- ⑤ 경민사랑장학의 지급 및 수혜기간은 장학규정 별표에 의한다.(신설 2022.3.1.)

제22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부터 제7조, 제12조, 제14조, 제22조의 “장학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장학관련 업무는 본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7.4.1., 2019.9.1., 2020.3.1., 2020.9.1., 2021.3.1., 2021.9.1., 2022.3.1., 2022.9.1., 2024.3.1. 2025.3.1., 2025.9.1. 2026.3.1.)

장학금 종류 및 선발기준

1. 정규과정, 학사학위과정, 산업체위탁과정

교내 장학금			
영역	장학금 종류		선발기준 및 지급내용
섬김	설립자 장학 (신앙)	선발기준	- 학교설립이념에 적합한 자로 품행이 방정하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며,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해 미취득 과목 없이 성적이 3.0 이상인 자 중 저소득자를 우선 선발한다.
		지급내용	- 해당자에 한하여 일정액 지급한다. 단, 해당자가 있을 시만 지급한다.
	목회자 장학	선발기준	- 목회를 하는 자 및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해 미취득 과목 없이 성적이 2.5 이상인 자. 단, 신입생의 경우 1학년 1학기의 성적이 산출되지 않으므로 성적제한 조항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
		지급내용	- 해당자에 한하여 일정액 지급한다.
모심	설립자 장학 (효도)	선발기준	- 학교설립이념에 적합한 자로 품행이 방정하고, 효도생활을 함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며,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해 미취득 과목 없이 성적이 3.0 이상인 자 중 저소득자를 우선 선발한다.
		지급내용	- 해당자에 한하여 일정액 지급한다. 단, 해당자가 있을 시만 지급한다.
	가족 장학	선발기준	- 직계가족으로 2명 이상이 본 대학에 재학 중이며,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해 미취득 과목 없이 성적이 2.5 이상인 자. 단, 신입생의 경우 1학년 1학기의 성적이 산출되지 않으므로 성적제한 조항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
		지급내용	- 해당자에 한하여 일정액 지급한다.
	교내제자사랑 장학(●/★)	선발기준	- 해당 장학금의 기부취지에 따라 선발한다.
		지급내용	- 해당 장학금의 기부취지에 따라 지급한다.
나눔	설립자 장학 (민족, 선행)	선발기준	- 학교설립이념에 적합한 자로 품행이 방정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타의 모범이 되며,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해 미취득 과목 없이 성적이 3.0 이상인 자 중 저소득자를 우선 선발한다.
		지급내용	- 해당자에 한하여 일정액 지급한다. 단, 해당자가 있을 시만 지급한다.
	특별인재전형 장학	선발기준	- 해당학과의 선정기준에 부합한 자.
		지급내용	- 해당자에 한하여 수업료의 전액을 지급한다.
	경민사랑 장학A	선발기준	- 본 대학 전문학사과정 졸업생 출신인 자. (1, 2학년 4개 학기)
		지급내용	- 해당자에 한하여 일정액 지급한다.
	경민사랑 장학B	선발기준	- 경민학원 내 3고 출신 경민 예비대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수시 입학한 자. (1, 2학년 4개 학기)
			- 경민학원 내 3고 출신 경민 예비대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정시 입학한 자. (1학년 2개 학기) - 경민학원 내 3고 출신인 자. (경민 예비대학생프로그램 미이수 자.)

			(입학년도 1학기 1회)
		지급내용	- 해당자에 한하여 일정액 지급한다.
경민사랑 장학C	선발기준		- 경민 예비대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신입학한 자. (2개 학기 : 1-1, 1-2) - 경민 예비대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편입학한 자. (편입학학기 1회) - 경민 예비대학생 프로그램 이수자 중 신·편입생을 유치한 자. (3개 학기 : 1-1, 1-2, 2-1, 3-1) (단, 3-1의 경우 2-2에 신·편입생을 유치하는 경우에 한함)
	지급내용		- 해당자에 한하여 일정액 지급한다.
경민사랑 장학D	선발기준		- 경민학원 내 유치원, 중학교 출신인 자. (입학년도 1학기 1회) - 본교 평생교육원 이수자 본인 및 자녀 입학생. (입학년도 1학기 1회)
	지급내용		- 해당자에 한하여 일정액 지급한다.
만학도 장학	선발기준		- 입학년도 기준 30세 이상인 학생인 자.
	지급내용		- 신입생 해당자에 한하여 일정액 지급한다.
복지 장학	선발기준		-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지원구간 1-9구간),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해 미취득 과목 없이 성적이 3.0 이상인 자.
	지급내용		- 해당자에 한하여 일정액 지급한다. 단, 해당자가 있을 시만 지급한다.
장려 장학	선발기준		-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 로(지원구간 1-9구간),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해 미취득 과목 없이 성적이 2.5 이상인 자.
	지급내용		- 해당자에 한하여 일정액 지급한다. 단, 해당자가 있을 시만 지급한다.
희망 장학	선발기준		- 가정 환경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로(소득구간 0구간),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해 미취득 과목 없이 성적이 2.5 이상인 자. 단, 신입생의 경우 1학년 1학기의 성적이 산출되지 않으므로 성적 제한 조항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
	지급내용		- 해당자에 한하여 일정액 지급한다.
특기자 기숙사 장학	선발기준		- 입주학생 중 해당부서의 추천을 받은 자.
	지급내용		- 해당자에 한하여 일정액을 지급한다.
학과공로 장학	선발기준		- 학교 및 학과의 각종 행사 등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 중에서 학과장의 추천에 의해 미취득 과목 없이 성적이 2.5 이상인 자.
	지급내용		- 해당자에 한하여 일정액 지급한다.
산업체공로 장학 (●)	선발기준		- 산업체 위탁생으로 학과 봉사 등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 중에서 학과장의 추천에 의해 미취득 과목 없이 성적이 2.5 이상인 자. 단, 신입생의 경우 1학년 1학기의 성적이 산출되지 않으므로 성적 제한 조항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
	지급내용		- 해당자에 한하여 일정액 지급한다.
장애학생 도우미 장학 (●/★)	선발기준		- 장애학생의 학습편의에 도움을 주는 자.
	지급내용		- 해당자에 한하여 일정액 또는 일정액+봉사시간 지급한다. 단, 일정액+봉사시간 선택시 변동된 내용을 지급한다.
교직원 장학	선발기준		- 본 대학에 교직원 및 배우자 또는 자녀로,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해 미취득 과목 없이 성적이 2.5 이상인 자. 단, 신입생의 경우 1학년 1학기의 성적이 산출되지 않으므로 성적제한 조항을 적용 받지 아니하며, 임시직·조교는 제외한다.
	지급내용		- 해당자에 한하여 일정액 지급한다.
보훈 장학 (●/★)	선발기준		- 보훈대상자 본인 또는 유자녀로서 학업성적이 백점환산 점수 70점 이상인 자. 단, 신입생의 경우 1학년 1학기의 성적이 산출되지 않으므로 성적제한 조항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
	지급내용		- 등록금 전액 면제(본 대학과 국가에서 지급)
북한이탈주민 장학 (●/★)	선발기준		- 북한이탈주민 본인 또는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백점환산점수 70점 이상인 자. 단, 신입생의 경우 1학년 1학기의 성적이 산출되지 않으므로 성적제한 조항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
	지급내용		- 등록금 전액 면제(본 대학과 국가에서 지급)

	산업체 장학 (●)	선발기준	- 산업체위탁생으로 별도 학급으로 편성된 자.
		지급내용	- 해당자에 한하여 일정액 지급한다.
	학사학위장학 (★)	선발기준	- 학사학위전형으로 입학한 자.
		지급내용	- 해당자에 한하여 일정액 지급한다. - 학사학위학과 수업료의 30%를 감면한다. 단, 학·군 협약체결부대에 한하여 수업료의 40%를 감면한다.
	외국인 장학	선발기준	- 본 대학에 입학한 외국인인 자.
		지급내용	- 해당자에 한하여 일정액 지급한다.
	성인학습자반 장학	선발기준	- 성인학습자반에서 수학하는 자. 단, 수업료 3,204,400원 초과 학과만 해당.
		지급내용	- 해당자에 한하여 일정액 지급한다.
	학우사랑 장학(●/★)	선발기준	- 나눔장학 기부자 중에서 상위 기부자로 선발된 자.
		지급내용	- 해당자에 한하여 일정액 지급한다.
	다문화가정 장학	선발기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거 다문화가족으로 인정된 자로서 미취득 과목 없이 성적이 2.5 이상인 자. 단, 신입생의 경우 1학년 1학기의 성적이 산출되지 않으므로 성적제한 조항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
		지급내용	- 해당자에 한하여 일정액 지급한다.
	지역사회재능 장학 (★)	선발기준	- 학과의 추천을 받아 지역사회에 재능을 기부한 자. 단, 제 18조의 동종 장학금의 중복 지급 제한 조항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지급내용	- 해당자에 한하여 일정액 지급한다.
채움	성적우수 장학 (●/★)	선발기준	- 입학 및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과수석, 과차석, 과차차석 등으로 구분하여 선발하며, 미취득 과목이 없는 자. - 과정별 별도 지침에 준한다.
		지급내용	- 해당자에 한하여 일정액 지급한다. 단, 해당자가 있을 시만 지급한다.
	입학특기생 장학	선발기준	- 학과특성에 맞는 우수학생을 입학시부터 스카우트 방식으로 선발하며, 미취득 과목 없이 성적이 2.5 이상인 자. 단, 신입생의 경우 1학년 1학기의 성적이 산출되지 않으므로 성적제한 조항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
		지급내용	- 해당자에 한하여 일정액 지급한다.
	해외연수 장학	선발기준	- 학교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자. - 해당 부서에서 추천 받은 자.
		지급내용	- 해외 연수 시 책정한다.(단, 대상 인원내 따라 장학금 지급내용이 변동 될 수 있음)
	특별 장학 (★)	선발기준	- 교내·외에서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 - 국가공인을 받은 단체의 세계대회 및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자 또는 단체 - 전산, 건축, 요리, 예술, 체육 등 세계대회 및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자 또는 단체 - 선출직 공직자로서 학교 명예를 높인 자. -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지급내용	- 해당자에 한하여 일정액 지급한다.
	봉사 장학 (●/★)	선발기준	- 학생자치활동 또는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학교발전에 공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미취득 과목이 없이 성적이 2.0 이상인 자. - 학생자치단체장의 경우 활동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한다. - 학생자치활동을 제외한 봉사 장학은 반대표, 학사학위 과대표에 한한다.
		지급내용	- 해당자에 한하여 일정액 지급한다.
	근로 장학 (★)	선발기준	- 학업성적이 양호하고 교내 특정 부서에 배치되어 노력을 제공한 자.
		지급내용	- 해당자에 한하여 일정액 지급한다.
	튜터링 장학 (★)	선발기준	- 튜터링 프로그램 참여 학생 중 해당부서에서 추천 받은 자.
		지급내용	- 해당자에 한하여 일정액 지급한다.
	어학 장학	선발기준	- 어학 강좌 프로그램 이수 학생 중 해당부서에서 추천 받은 자.

	(●/★)	지급내용	- 해당자에 한하여 일정액 지급한다. (단, 해당 강좌에 따라 장학금 지급내용이 변동 될 수 있음)
	KM 마일리지 장학	선발기준	- 학교활동의 성과를 항목별로 평가하여 누적된 마일리지 점수가 높은 자.
		지급내용	- 해당자에 한하여 일정액 지급한다. (단, 대상 인원에 따라 장학금 지급내용이 변동 될 수 있음)
	성적향상 장학	선발기준	- 당해학기 백분위 성적이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에 비해 향상된 자. (단, 외국인장학을 수혜한 자는 지급 제외)
		지급내용	- 해당자에 한하여 일정액 지급한다. (단, 대상 인원에 따라 장학금 지급내용이 변동 될 수 있음)
	유보 통합지원장학	선발기준	- 유아교육과 학생 중 영·유아 관련 기관 재직종인 자로 미취득 과목 없이 성적이 2.5 이상인 자. 단, 신입생의 경우 1학년 1학기의 성적이 산출되지 않으므로 성적 제한 조항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
		지급내용	- 해당자에 한하여 일정액 지급한다.
	온라인학습 장려장학	선발기준	- 전 과목을 원격수업으로 수강하는 자.
		지급내용	- 해당자에 한하여 일정액 지급한다.
	교외 장학금		
장학금 종류		선발기준	
국가기관, 사회단체, 장학재단, 기업체, 개인 등의 외부기관 장학		- 장학금 기부기관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	

※ 단, 산업체학생은 (●)와 학사학위학생은 (★)의 장학만 수혜 가능함

2. 전문기술 석사과정

교내 장학금			
영역	장학금 종류		선발기준 및 지급내용
나눔	전문기술 석사과정 장학	선발기준	- 성적이 3.0 이상인 자. 단, 신입생의 경우 1학년 1학기의 성적이 산출되지 않으므로 성적 제한 조항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
		지급내용	- 해당자에 한하여 일정액 지급한다.
	전문기술 석사과정 KM장학	선발기준	- 성적이 3.0 이상인 자로 해당부서의 선발기준에 부합한 자(특별, 동문, 목회자)
		지급내용	- 해당자에 한하여 일정액 지급한다.
채움	성적우수장학	선발기준	-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미취득 과목이 없는 자. 단, 전공별 5명 이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급내용	- 해당자에 한하여 일정액 지급한다. 단, 해당자가 있을 시만 지급한다.
	공로장학	선발기준	- 미취득 과목 없이 성적이 2.0 이상인 자로서 전공별로 대표하는 자. 단, 전공별 5명 이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급내용	- 해당자에 한하여 일정액 지급한다.